

● 제32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 】

의안번호 1344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유만희 의원외 15명
- 나. 제안일 : 2023. 10. 16.
- 다. 회부일 : 2023. 10.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출산가정 등의 양육 현실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돌봄 지원 사업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가로 규정함.
(안 제6조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 가정 내 돌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아이돌보미 사업의 지원 사항 확대(안제6조제1항제4호)

- 동 개정안은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등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u>아이돌보미 사업</u>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아이돌보미 사업 및 아이</u>

현행	개정안
5. ~ 8. (생략) ②·③ (생략)	<u>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u> <u>등 이용 활성화 사업</u> 5.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공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였음.
- 또한 2022년부터는 저출산 대응 정책인 엄마아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인 영아 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시범운영하면서 2023년에는 등하원 전담과 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 지원사업까지 확대하여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지원사업>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① 영아 전담 안심 아이돌봄 지원사업 ('22년 6개구 → '23년 25개구)	○ (목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양육자의 영아에 대한 돌봄부담 경감 ○ (내용) 구별 전담돌보미 지정(25개구 총 800명), 특화교육(8시간), 전담돌보미 추가수당 지급 (시간당 1천원,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내용												
②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5개구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이용수요가 높은 등하원 시간대 미스매칭 해소 ○ (내용) 구별 전담돌보미 지정(5개구 상반기 300명→하반기 500명), 특화교육(2시간), 전담돌보미 추가수당 지급(시간당 1천원, 1인당 월 최대 10만원) <table border="1"> <tr> <th>운영지역</th> <th>용산</th> <th>광진</th> <th>중랑</th> <th>서대문</th> <th>강동</th> </tr> <tr> <td>500</td> <td>55</td> <td>80</td> <td>140</td> <td>90</td> <td>135</td> </tr> </table>	운영지역	용산	광진	중랑	서대문	강동	500	55	80	140	90	135
운영지역	용산	광진	중랑	서대문	강동								
500	55	80	140	90	135								
③ 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 지원사업 (5개구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맞벌이 가정 등 갑자기 아픈자녀의 병원동행 및 돌봄 지원 ○ (내용) 구별 전담돌보미 지정(5개구 내 모든 돌보미, 720명), 특화교육(2시간), 전담돌보미 추가수당 지급(시간당 1천원 1인당 월 최대 5만원) <table border="1"> <tr> <th>운영지역</th> <th>성동</th> <th>동대문</th> <th>강북</th> <th>강서</th> <th>서초</th> </tr> <tr> <td>720</td> <td>117</td> <td>144</td> <td>133</td> <td>186</td> <td>140</td> </tr> </table>	운영지역	성동	동대문	강북	강서	서초	720	117	144	133	186	140
운영지역	성동	동대문	강북	강서	서초								
720	117	144	133	186	140								

- 아이돌보미 사업은 기본적으로 소득기준별로 이용료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소득기준별 정부지원 예시(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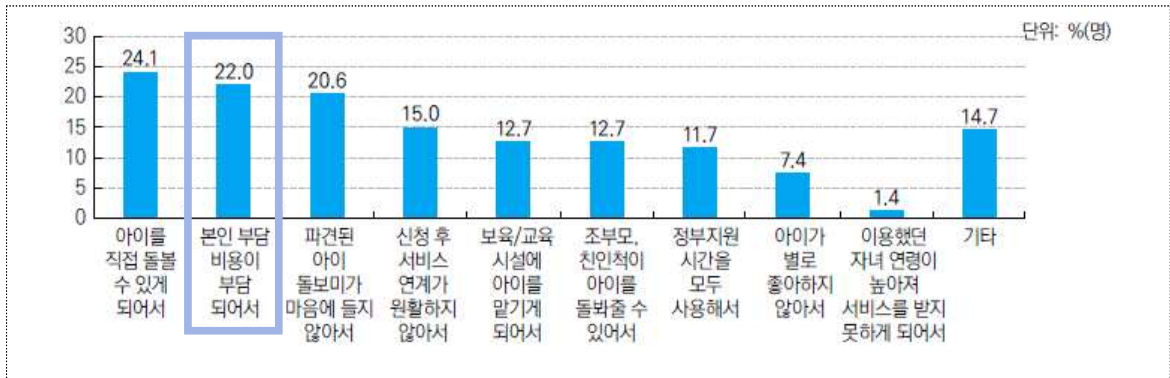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시간제(기본형 기준) (기본이용료 시간당 11,080원)				영아종일제 (기본이용료 시간당 11,080원)	
		만7세 이하		만8세~만12세 이하		3개월 ~ 36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418원 (85%)	1,662원 (15%)	8,310원 (75%)	2,770원 (25%)	9,418원 (85%)	1,662원 (15%)
나형	120% 이하	6,648원 (60%)	4,432원 (40%)	2,216원 (20%)	8,864원 (80%)	6,648원 (60%)	4,432원 (40%)
다형	150% 이하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1,662원 (15%)	9,418원 (85%)
라형	150% 초과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11,080원 (100%)

- 그러나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2018)¹⁾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중단 사유 중 ‘본인부담 비용이 부담 되어서’가 22.0%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게 되어서’(24.1%)에 이어 2번째로 높

1) 육아정책연구소(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은 것으로 나타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중단 사유>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광역지자체 3곳(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과 강남구, 도봉구를 포함한 기초 지자체 29곳에서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본인부담금 지원현황('23. 9월 기준)>

지자체	본인부담금 지원율				기간	소요예산 ('23년)	재원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경남	67%	25%	41%	40%	'23.7월~	1,854백만원	도비 30%, 시군비 70%
경북	100%	90%	90%	90%	'20년~	16,666백만원	도비 40% 시군비 60%
제주	40%	40%	40%	20%	'18년~	454백만원	도비 100%

- ※ 기초 지자체 : 서울(2), 부산(1), 인천(1), 경기(2), 강원(2), 충남(6), 전북(2), 전남(9), 경남(5)
 - ▶ 강남구 본인부담금 지원율: 가형 100%, 나형 90%, 다형 80%, 라형 50%
 - ▶ 도봉구 본인부담금 지원 : 다자녀 가정(소득 무관)에 시간당 1천원 지원
- ※ 서초구 자체사업 : 만 3개월~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월 50시간 아이돌봄 무료 지원

- 특히 서울 지역의 둘째 아동 이상 출생아동 수가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다자녀 가족 기준을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양육 및 돌봄지원의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가 매우 인정된다 할 것임.

<서울시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변화 추이>

구분	총계		첫째아		둘째아 이상	
	출생아수	비율	출생아수	비율	출생아수	비율
2013	84,066	(100.0)	48,248	(57.4)	35,818	(42.6)
2014	83,711	(100.0)	48,795	(58.3)	34,916	(41.7)
2015	83,005	(100.0)	48,698	(58.7)	34,307	(41.3)
2016	75,536	(100.0)	44,371	(58.7)	31,165	(41.3)
2017	65,389	(100.0)	38,285	(58.5)	27,104	(41.5)
2018	58,074	(100.0)	34,650	(59.7)	23,424	(40.3)
2019	53,673	(100.0)	32,519	(60.6)	21,154	(39.4)
2020	47,445	(100.0)	29,215	(61.6)	18,230	(38.4)
2021	45,531	(100.0)	28,366	(62.3)	17,165	(37.7)
2022	42,602	(100.0)	27,702	(65.0)	14,900	(35.0)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2013-2022)

- 한편 2022년말 기준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66%²⁾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향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2)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수(12,672명) ÷ 서울시 0~12세 아동인구 수(764,399명) =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1.66%)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음.

3 종합 의견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초저출산 상태이며, 특히 서울시 합계출산율(0.59명)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출생아 수 역시 역대 최저로 2010년 이후 초저출산이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 가정 내 돌봄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가 매우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의 저조한 이용률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